

제 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, 제 365 조 및 정관 제 22 조, 제 24 조에 의거 제 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0 년 03 월 30 일 (월요일) 오전 09 시 00 분

2. 장 소 :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848 해마로푸드서비스주식회사 진천공장 2 층 대강당

3. 회의 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

- 1) 감사보고
- 2) 영업보고
- 3)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실태보고
- 4)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나. 부의안건 (※ 의안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)

제 1 호 의안 : 제 5 기(2019.01.01~2019.12.31) 재무제표[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-이익잉여금처분 중 현금배당(1 주당 30 원) 포함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3 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의안 : 사외이사 김형석 선임의 건

제 3-2 호 의안 : 사외이사 김상만 선임의 건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4. 경영참고사항의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거, 당사의 사업개요, 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전자공시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새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새도우보팅)제도가 2018 년 01 월 01 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
2019 년 09 월 16 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약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,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약하십시오.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www.ksd.or.kr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 대상 종목)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(1) 직접 행사
 - 내국인 : 신분증 (본인) / 외국인 : 외국인투자등록증
- (2) 대리 행사
 - 내국인 및 외국인: 위임장(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인감증명서) 및 대리인의 신분증

8. 안내사항 등

금번 총회 시 주총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
2020 년 03 월 13 일

해 마 로 푸 드 서 비 스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박 성 목 (직인생략)

[별첨] 제 5 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세부사항

제 1 호 의안 : 제 5 기(2019.01.01~2019.12.31) 재무제표[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포함]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- 이익잉여금처분 중 현금배당(1 주당 30 원) 포함

※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현행	개정(안)	검토사항
제 8 조의 2 (주권의 종류)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제 8 조의 2 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,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소제목 수정
<신설>	제 10 조의 1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	주식등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
<신설>	제 10 조의 2(주식의 발행 및 배정)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. 1.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,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(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)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. 1.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.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.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.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	신주 발행 및 배정에 관한 규정 신설

	<p>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 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주의 종류와 수 2.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.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4. 신주의 인수방법 5.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, 수량,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<p>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</p> <p>⑦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새로이 발행되는 신주의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주주의 권리를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</p>	
<신설>	제 20 조의 1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	사채등 전자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
제 23 조 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 ②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	제 23 조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소집권자 수정
제 26 조 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한다.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	제 26 조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. 다만,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이사회 의장 수정
제 45 조 (이사회 구성 및 소집)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	제 45 조(이사회 구성과 소집)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의일 1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④ 제 2 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권자를 이사	이사회 소집자 범위확대 및 세부사항 수정

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	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	
제 45 조의 1 (이사회의 의장)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,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.	제 45 조의 1 (이사회의 의장) ① 이사회는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다만 제 45 조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.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유고시에는 제 42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	선임과 임기를 따로 분류
부칙 <신설>	부칙 제 1 조(개정) 본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

제 3 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제 3-1 호 의안 : 사외이사 김형석 선임의 건

구분	성명	신규 여부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 관계	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
사외이사	김 형 석 (74.09.22)	신규	1993~200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 전공 (법학 부전공) 2008~2009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(Visiting Scholar)-스페인마드리드 방문학자 과정 1999 제 41 회 사법고시 2000~2002 사법연수원 수료(제 31 기) 2006~2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0~2013 법무부 기획검사 2013~201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15~2017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2017~2018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8~201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19~현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	사외이사 추천위원회	해당없음	해당없음

제 3-2 호 의안 : 사외이사 김상만 선임의 건

구분	성명	신규 여부	주요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의 관계	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
사외이사	김 상 만 (76.09.03)	신규	1996~200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 2001~2008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12~2013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, 법학석사(LL.M.) 2002 제 44 회 사법고시 2003~2005 사법연수원 수료(제 34 기) 2007 미국 공인회계사 2005~2008 청주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법무관 2011~2013 한국인정원 감사 2008~현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	사외이사 추천위원회	해당없음	해당없음

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구분	전기	당기
이사 수(사외이사 수)	6(2)	6(2)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60 억원	30 억원

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

구분	전기	당기
감사의 수	1	1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	5 억원	2 억원